

# 『생활예술 댄스 페스티벌 위댄스(WeDance)』

## 전문용역 과업 수행에 관한 약정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 김진영(이하 “계약당사자” 라 한다)을 2017년 서울문화재단 『생활예술 댄스 페스티벌 위댄스(WeDance)』 사업 전문인력으로 위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과업 수행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과업내용) “재단”이 추진하는 용역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대상사업 : 생활예술 댄스 페스티벌 ‘위댄스(WeDance)’
2. 과업 분야: 프로듀서(PD)
3. 과업 계약기간 : 2017. 6. 1. ~ 2017. 12. 31.(7개월)
4. 과업 주요내용

(1) “계약당사자”가 ‘전문인력’으로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업은 별첨된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2) 과업 주요내용

- 공공기관-전문예술인-생활예술동호회가 연계된 ‘위댄스 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
- 커플댄스 컨설턴트, 프로젝트댄스 컨설턴트 등 각 부문별 전문 컨설턴트의 방향 제시에 따라 구체적인 댄스 페스티벌의 기획 및 운영
- 장르별 댄스 동호회의 소통구조 활성화를 위한 위댄스-맵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위댄스 페스티벌을 위한 장르·지역별, 예술가 연계 등 워크숍 개최
- 커플댄스 컨설턴트, 프로젝트댄스 컨설턴트 등 각 부문별 전문 컨설턴트의 지도를 받아, 컨설팅과 자문활동의 현장 활동 지원(참석확인서, 평가보고서 취합 등)
- 생활예술-전문가 교류환경 조성 및 프로젝트댄스 결합모델 활성화
- 홍보 기획 및 운영, 관련 사업 행사 지원

4. 기타 협조사항

“재단”과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며 제반 업무에 대해 협조한다. 그 세부 내역은

재단에서 수립한 계획을 준용하되, 상호 의견을 존중하여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2조(사례비 지급) “계약당사자”의 과업수행에 대하여 “재단”이 지급해야 하는 사례비 금액 및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은 “계약당사자”의 ‘생활예술 댄스 페스티벌 위댄스(WeDance)’ 수행에 대한 사례비로 一금이천이백사십만원정 (₩22,400,000 / 각종 세금 포함)을 지급한다.  
※ 위 사례비는 위촉기간 중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용역료 이외에 교통비, 식비 등 관련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재단”은 “계약당사자”의 사례비를 매월 1회 320만 원 지급하되, 매월 초 전달의 월별 활동보고서 접수 후 15일 이내 “계약당사자”가 개설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3조(상호의무, 책임 등) “재단”과 “계약당사자”는 상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Handwritten signature or mark.

1. “계약당사자”는 “재단”의 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성실히 진행한다.
2. “재단”은 “계약당사자”의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3. “계약당사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에 대한 보안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4조(약정의 해지)**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재단”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서울문화재단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2. 과업 이행 정도가 현저히 떨어져 약정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3. “계약당사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4. 약정이 제1항의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약정이 해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약정 후부터 해지일까지의 과업수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단”에게 제출하고, “재단”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사례비 잔액금액을 결정한다.

**제5조(기타사항)**

1. 과업에 따른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 타인에게 양도, 배포, 고지할 수 없음.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 검토,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3.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하거나 생산한 자료 및 정보를 임의로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약정의 해석)**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 약정의 해석은 재단 규정 및 계약에 관한 일반 법률, 관행 등에 따른다.

**제7조(약정의 효력)**

1. 이 약정서의 효력은 “재단”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 사항의 이행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2.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재단”과 “계약당사자”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 . .

[ “재단”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사업자등록번호 : 201-82-04361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 주철환 (인))



[ “계약당사자”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경일로 북동 4길 5, 301호

생년월일 : 810602

성 명 : 김지영 김민우

# 『생활예술 댄스 페스티벌 위댄스(WeDance)』

## 전문용역 과업 수행에 관한 약정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 최샘이(이하 “계약당사자” 라 한다)을 2017년 서울문화재단 『생활예술 댄스 페스티벌 위댄스(WeDance)』 사업 전문인력으로 위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과업 수행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과업내용) “재단”이 추진하는 용역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대상사업 : 생활예술 댄스 페스티벌 ‘위댄스(WeDance)’

2. 과업 분야: 매니저

3. 과업 계약기간 : 2017. 6. 1. ~ 2017. 12. 31.(7개월)

4. 과업 주요내용

(1) “계약당사자”가 ‘전문인력’으로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업은 별첨된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2) 과업 주요내용

○ 공공기관-전문예술인-생활예술동호회가 연계된 ‘위댄스 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

○ 커플댄스 컨설턴트, 프로젝트댄스 컨설턴트 등 각 부문별 전문 컨설턴트의 방향 제시에 따라 구체적인 댄스 페스티벌의 기획 및 운영

○ 장르별 댄스 동호회의 소통구조 활성화를 위한 위댄스-맵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위댄스 페스티벌을 위한 장르·지역별, 예술가 연계 등 워크숍 개최

○ 커플댄스 컨설턴트, 프로젝트댄스 컨설턴트 등 각 부문별 전문 컨설턴트의 지도를 받아, 컨설팅과 자문활동의 현장 활동 지원(참석확인서, 평가보고서 취합 등)

○ 생활예술-전문가 교류환경 조성 및 프로젝트댄스 결합모델 활성화

○ 홍보 기획 및 운영, 관련 사업 행사 지원

4. 기타 협조사항

“재단”과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며 제반 업무에 대해 협조한다. 그 세부 내역은

재단에서 수립한 계획을 준용하되, 상호 의견을 존중하여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2조(사례비 지급) “계약당사자”의 과업수행에 대하여 “재단”이 지급해야 하는 사례비 금액 및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은 “계약당사자”의 ‘생활예술 댄스 페스티벌 위댄스(WeDance)’ 수행에 대한 사례비로 一금일천육백팔십만원정 (₩16,800,000 / 각종 세금 포함)을 지급한다.

※ 위 사례비는 위촉기간 중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용역료 이외에 교통비, 식비 등 관련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재단”은 “계약당사자”의 사례비를 매월 1회 240만 원 지급하되, 매월 초 전달의 월별 활동보고서 접수 후 15일 이내 “계약당사자”가 개설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3조(상호의무, 책임 등) “재단”과 “계약당사자”는 상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는 “재단”의 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성실히 진행한다.
2. “재단”은 “계약당사자”의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3. “계약당사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에 대한 보안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4조(약정의 해지)**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재단”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서울문화재단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2. 과업 이행 정도가 현저히 떨어져 약정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3. “계약당사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4. 약정이 제1항의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약정이 해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약정 후부터 해지일까지의 과업수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단”에게 제출하고, “재단”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사례비 잔액금액을 결정한다.

**제5조(기타사항)**

1. 과업에 따른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 타인에게 양도, 배포, 고지할 수 없음.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 검토,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3.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하거나 생산한 자료 및 정보를 임의로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약정의 해석)**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 약정의 해석은 재단 규정 및 계약에 관한 일반 법률, 관행 등에 따른다.

**제7조(약정의 효력)**

1. 이 약정서의 효력은 “재단”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 사항의 이행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2.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재단”과 “계약당사자”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6. 1 .

[ “재단”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사업자등록번호 : 201-82-04361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 주 철 환 (인)



[ “계약당사자”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연희동 연희가 아파트 101호105호

생년월일 : 1986년 02월 02일

성 명 : 채성이 (인)